

화재조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조물 책임법과 관련하여-

Research about Improvement Way of Fire Investigation System  
-Regarding Product Liability Responsibility Law-

문용수<sup>†</sup> · 공하성\* · 윤명오\*\*

Yong-Soo Mun<sup>†</sup> · Ha-Sung Kong\* · Myong-O Yoon\*\*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재난과학과, \*정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방재안전연구소  
(2008. 8. 29. 접수/2008. 12. 12. 채택)

요 약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화재조사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내·외 화재조사의 특성을 알아보고 비교하여 경찰화재조사, 소방화재조사, 사설 화재감정의 기관별 화재조사의 목적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에 따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민간 사설 화재감식, 감정, 해석 업체의 필요성 둘째, 화재조사 제도의 소방, 경찰의 일원화 셋째, 대학에 화재 감정 관련학과 설립과 감정업 자격 제도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mprovement of fire investigation system is required to supplement problem that can happen after product liability law enforcement of our country. This treatise searches special quality of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fire investigation that was enforced present with theoretical background of manufacture water responsibility law and compared. And is based and grasped objective and hangup in police fire investigation, fire fighting fire investigation, engine fire investigation of private fire judgment. By improvement way accordingly first, proposed fire emotion connection studies and establishment and connoisseurship qualification system establishment etc. in the common people private fire diet, judgment, analysis company's necessity second, fire fighting of fire investigation system, police's member anger third, college.

**Keywords:** Product liability law, Fire investigation, Fire judgment, Fire investigation system

1. 서 론

현재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밑바탕이 된 국민은 과거에는 국가라는 절대 권력에 희생자로서 생활했던 시대가 있었으며, 그 후 기업에 의해 생산직 근로자로 지배를 받아왔던 산업화 초기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권력의 지배를 받는 국민과 생산직 종사자가 아닌 국가의 주체, 소비의 주체인 국민과 소비자가 우리나라의 주인으로 부각되는 시대이며, 국가와 기업이 국민과 소비자의 생각과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불신을 받거나 도태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 경제, 정책 등이 우선이며, 기업은 소비자를 위해 보다 안전한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제품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기업의 신속한 피해 복구 활동도 이제는 단순한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을 넘어 기업의 사활을 건 최대의 위기의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미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대책으로 제조물책임 예방(Product liability Prevention, PLP)과 사고 발생 후 제조물책임 방어(Product liability Defense, PLD) 계획을 시행하고 PL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sup>1)</sup>을 추진하고 있는 등 기업은 소비자에 의해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경제 시장 구조가 변화하고, 정치 입법까지 지배하는 국민과 소비자의 시대가 되었다.

<sup>†</sup>E-mail: moon690930@hanmail.net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의 권리가 사회적 지지를 얻어 2000년 1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으며, 동법은 2002년 7월부터 시행되어오고 있는데 화재와 연관된 「제조물책임법」 사건의 경우 입증책임 및 입증대책의 미비로 「제조물책임법」과 「민법」 750조를 제한하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피해 배상측면에서 대비되는 면이 있고, 대법원 판례도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시작 단계에서 「제조물책임법」이 자리를 잡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화재조사 관련 국가기관은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 화재조사에 대한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 대처해 나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로 알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화재 민원에 대한 혁신적 대처 방안과 앞으로의 민간 부분의 화재감정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 대한 화재원인 및 확산요인을 찾는 조사활동이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 「실화책임에관한법률」과 대조적인 피해 배상범위와 화재조사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찾기 위해 기관별 화재조사의 목적 및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과 발전적 대안을 결과로 제시하고자 한다.

## 2. 제조물책임법의 이론적 배경

### 2.1 제조물책임법의 개념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sup>2)</sup>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와 이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였으나,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에는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의 결함 존재와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즉, 과실입증에서 결함입증으로 변경됨에 따라 분쟁해결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재판상은 물론 재판 외의 중재·조정기구에서도 분쟁해결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sup>4)</sup>

### 2.2 화재조사와 제조물책임법

화재조사와 「제조물책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첫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야 하고 둘째, 원인 규명에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셋째, 법원의 참고인 진술 및 관련 자료 요청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sup>3)</sup>

소방방재청에서는 「제조물책임법」 시행 등 최근 소방관련 법률 분쟁의 증가에 대비하여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출신자 10여 명을 소방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였고, 화재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감식 능력을 높이고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법적 분쟁에 대비한 증거능력 확보 등을 위해 화재전문조사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광역시·도별 소방본부에도 화재조사담당(팀)을 신설하고 전국 162개 소방서에 화재조사계를 설치하였다. 또한 화재가 점차 대형화되고 방화 발생이 급증하면서 화재원인의 규명이 복잡해짐에 따라 과학적인 화재감식 능력 제고를 위해 중앙소방학교 내에 소방과학 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sup>4)</sup>

## 3. 화재조사의 특성

### 3.1 국내화재조사의 특성

「제조물책임법」 관련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화재사고의 경우 화재초기 상황이 최초 목격자에 의해 목격된 현장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구두진술, 진술서 및 진술조서 형식으로 보존된 증거자료 확보가 가능할 수 있지만 화재와 관련된 피해자, 관계자의 목격 진술은 원인규명에 있어 신뢰성이 없으며 또한 목격자가 없는 완전히 전소된 현장의 경우도 남아 있는 잔해 조사만을 통하여 발화 부분 및 발화 원인을 규명 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화재 발생 후 발생 전의 수많은 특징점 등이 피해자, 관계자, 목격자로부터 제시되고, 이러한 특징점을 현장에 남아 있는 잔해를 통하여 흔적을 찾는 조사활동만으로는 원인규명의 한계가 있으며, 어쩌면 이미 화재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나 흔적이 완전 소실된 현장에서 그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조사에 임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화재현장은 피해자 등의 진술로 평소 전기누전으로 차단기가 자주 작동하였다던가, 기타 텔레비전 등 특정 제조물에서 타는 냄새가 감지되었다는 피해자의 화재증후의 진술만으로는 화재현장과 피해자 등이 주장하는 제조물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란 피해자(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화재 특성상 불로 인해 모든 것들이 소실된 상태에서 진화를 위한 소화약제 살포와 강한 주수(강한 압력의 소화용수 방사)로 현장의 모든 것들이 위치 이

동되고, 마지막으로 잔화 처리 과정에 증장비까지 동원된다면 일부 남아 있는 구조물까지 완전 붕괴 소실되어 현장은 화재 이전의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물리, 화학적으로 완전 변화된 모습으로 남는다.

이러한 변화된 현장에서 발화원인과 연소 확산요인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도의 지식과 숙련된 조사기술이 필요하며,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정부분이 축소된 현장이라 하더라도 변화의 특성상 발화부분 내에서 특정 제조물의 결합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원인조사에는 한계가 있다.

원인을 판단할 만한 증거 및 흔적을 발견할 확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국내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으며, 경기지방경찰청 화재사건 임상현황(2003-2007)을 참고로 추정한다면 5년 평균 발화원인 규명율이 약 21% 내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방방재청의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은 Table 2에서 화재원인의 미상(발화원 불상)이 8.4%이고, Table 1의 경기지방경찰청 화재사건 임상현황에서 발화원 불상이 평균 78.4%로 Table 2와 비교해 볼 때 화재원인의 미상이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화재조사 선진국일수록 화재원인 미상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해 볼 때 낙후된 소방기관의 화재조사에 대한 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 Gyeonggi Provincial Police Agency's fire event occurrence spot<sup>5)</sup>

년도	구분	총계	발화원 규명(%)			발화원 불상(%)
			방화	실화	기타	
2003	243건	59건(24.3%)			184건(75.7%)	
		25건	11건	23건		
2004	237건	44건(18.6%)			193건(81.4%)	
		27건	15건	2건		
2005	226건	46건(20.4%)			180건(79.6%)	
		26건	17건	3건		
2006	258건	49건(20.0%)			209건(80.0%)	
		24건	11건	14건		
2007	273건	67건(24.5%)			206건(75.5%)	
		30건	16건	21건		

**Table 2.** Cause fire occurrence present condition<sup>6)</sup>

구분	2008(7월)	
	건수	비율(%)
전기적요인	1,114	35.2
기계적요인	287	9.1
가스 누출	33	1
화학적요인	11	0.4
교통 사고	51	1.6
부주의	1,505	33.2
기타 실화	47	1.5
자연적요인	51	1.6
방화	41	1.3
방화 의심	214	6.8
미상	266	8.4
합 계	3,165	100

**3.2 국내외 화재조사 특성비교**

이미 세계적으로 화재조사 선진국인 영국, 미국, 일본 등은 화재현장의 특성상 발화원인 및 확산요인 규명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통계자료를 현실화하여 발화원인 및 확산원인이 규명된 자료만을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당연히 전체 화재발생 건수와 통계자료 건수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공무원 위주의 현장조사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화재원인에 대한 신중하고 과학적인 접근을 위해 과감히 사설 화재조사 요원과 같이 공동조사를 하고 있는 추세로, 프랑스의 경우는 국민으로부터 오히려 민간단체인 보험협회 화재조사 요원이 국가 조사관에 비해 기술적인 우위를 인정받고 화재현장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상급기관의 보고 위주의 화재조사와 각 기관의 업무 연관성의 입장에서 다소 편파적인 화재조사를 하고 있는 실태이며, 피해자는 화재와 관련된 「제조물책임법」에 적용되는 민사 또는 형사 관련 자료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민원인과 소비자, 피해자로서의 지위가 확보되지 않아 피해자의 입장에서 소송 진행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사소송 이외에 중요사건(살인, 강도 등)의 증거 인멸을 위한 화재와 Table 3과 같이 최근 5년간 화재보험 손해율에서 나타난 화재보험사의 손해율의 증가는 보험금 관련 방화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피해자 및 관계자에게 범 죄 용의점이 발견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면 피해자, 관계자에게 사건 내용 및 현장 감식, 감정 내용을 어느 부분까지 공개할 것이며, 이러한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피해자에게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자료를 공개할 것인가라는 문제점이 항상 내포하고 있는 것도 화재조사의 특성 중에 하나이다.

**Table 3.** The fire insurance loss ratio recently 5 years<sup>7)</sup>

연도	건수	경과보험료 (10억원)	발생손해액 (10억원)	경과손해율 (%)
2002. 3		187.8	96.0	51.11
2003. 3		205.8	111.7	54.29
2004. 3		202.1	124.5	61.62
2005. 3		207.7	116.3	56.01
2006. 3		244.2	101.1	41.39
4		21.8	13.1	59.92
5		44.7	21.0	46.98
6		66.1	31.9	48.24
7		87.9	42.4	48.21
8		109.5	50.2	45.79
9		130.7	54.1	41.36
10		151.9	63.8	41.99
11		172.8	72.1	41.72

## 4. 기관별 화재조사의 목적과 문제점

### 4.1 경찰화재조사

#### 4.1.1 경찰화재조사의 목적

경찰의 화재조사의 목적은 방, 실화 및 기타 범죄 혐의의 감별이다. 방화죄와 실화죄는 형법에 근거한 범죄로 화재현장을 조사 및 수사하여 원한, 치정, 금전 관련 방화의 혐의를 포착하거나, 실화와 관련된 책임소재 및 화재와의 과실 개연성 여부를 확인키 위함이며, 기타 범죄로는 살인사건, 절도사건, 강도사건 등의 증거 인멸을 위한 방화사건 감별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 4.1.2 경찰화재조사의 문제점

경찰화재조사의 목적은 범죄 혐의 포착과 범죄 증거 확보로, 피해자의 입장의 「제조물책임법」 관련 이재(罹災)관계의 민사 소송의 자료 확보라는 시각과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서로 추구하는 목적의 불일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조물책임법」 관련 증거 자료 확보와 경찰의 목적을 달리하는 부분이 같은 현장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조사와 민사 증거자료 확보에 큰 관심이 없는<sup>8)</sup> 경찰 화재조사만으로는 진정으로 필요한 피해자 등이 원하는 민사소송 증거자료 확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재의 경찰 조사 체제에서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현장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감정을 하는 행위가 통제되고 있어 피해자(소비자)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수사 기관인 경찰의 범중 혐의 포

착이라는 목적 하에 일방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고, 조사된 경찰 조사 결과 또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화재관련 민원을 비롯하여 경찰청 자체가 다른 기관에 비해 민원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민원행정서비스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에 대한 민원응대 서비스 정도는 다른 국가 기관의 전체적인 종합만족도가 63.3인 반면에 경찰청의 종합만족도는 52.0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sup>9)</sup>

이러한 경찰청의 민원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경찰의 전체적인 민원서비스 수준을 조사한 수치이지만 특히 화재사건에서는 다른 사건에 비해 고객의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민원의 건수와 민원의 정도가 심한 편으로 전체 민원에 대한 만족도 보다는 더 낮은 수치일 것으로 판단된다.

### 4.2 소방화재조사

#### 4.2.1 소방화재조사의 목적

소방의 화재조사의 목적은 예방, 경계, 진압 등 소방행정의 기초자료 확보이다.

소방관계법령에 근거한 소방화재조사는 피해조사와 원인조사로 분류하고 있으며, 조사된 자료는 원인별, 인적, 물적, 피해별 분석 정리하여 화재 재 발생 방지를 위한 소방행정 자료로 활용한다.

#### 4.2.2 소방화재조사의 문제점

소방 화재조사의 목적인 재 발생 방지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는 화재원인을 파악하여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건을 예방하고, 소방 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소방 기관은 소방시설의 인가 및 허가권자이기도 하다.

이는 소방 허가를 받은 시설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발화부분 규명이나 발화원인에 대한 사항을 판단하는데 자유로울 수 있으나, 연소 확산 원인에 대한 부분은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 시설을 점검하고, 인가 및 허가를 하는 주무관청인 소방방재청이 화재로 인한 연소 확산 원인 규명이 시설 점검, 인가, 허가 사항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발생할 것으로, 시설 인허가권이 있는 소방기관과 화재 발생 후 시설에 대한 취약점이나 인, 허가권내 문제점에 대해 소방 화재조사는 확산요인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없는 화재조사권과 시설 인,허가권 사이에 2중적 내부 갈등 구조가 존재하는 것이 문제이다.

대구 지하철 참사와 같이 방화범이 사회적 불만을 품고 유류로 방화한 사건은 발화부분 및 발화원인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된 것이 아니고, 소방관련 대피시설, 초기 진화설비, 제연설비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으나, 시설 인허가 기준에는 문제가 없어 소방관계법령에 명시된 시설 등이 현실 적용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건으로, 소방 시설 관련 연소 확산 원인을 소방 기관에서는 자유롭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경찰 기관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원하는 민사 소송 목적과 차이가 있는 화재현장을 같이 공유하므로 소방 기관에 의해 피해자(소비자)는 중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소방 기관의 재 발생 방지 자료 확보라는 목적 하에 일방적으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 또한 문제점이다.

### 4.3 사실 화재감정

#### 4.3.1 사실 화재감정의 목적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전문적인 범인이나 기타 형태로 사실 화재감정을 행하는 기관은 공식적으로 없으나,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은 각 보험사의 보험범죄 조사반과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 그리고 범인 손해사정업체가 일부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자를 위한 사실 화재조사가 아닌 보험과 연관된 방화 범죄 증거 확보가 목적이며, 확보된 증거는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의 형태로 민원을 접수하는 자료로 쓰이거나, 민사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이기 위한 목적이나, 사실 화재감정 기관이 앞으로 존재한다면 피해자 및 민원인의 입장에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 4.3.2 사실 화재감정의 문제점

보험사의 보험범죄 조사반과 범인 손해사정업체의 화재현장 조사는 인적행위나 행적조사 등에 치중하는 면이 있어 보험 가입자 등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며, 아직까지 소비자와 피해자를 위한 사실 화재조사 및 감정기관이 전무한 우리나라에서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 화재사건 피해자(소비자)로부터 그 필요성이 서서히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실 화재조사를 위한 체계적인 민간 교육 기관이나, 자격제도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 5. 개선방안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제시된 것들을 정리하면 첫째, 화재조사를 하는 경찰 및 소방 기관의 화재조사에 대

한 의지력 부족, 둘째, 현장감식 및 감정자의 전문성 부족, 셋째, 피해자에 대한 제조물책임에 관한 이해력 부족, 넷째,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 당사자로서의 결함에 대한 입증 조치 미비, 다섯째, 경찰, 소방 기관의 화재조사의 목적과 피해자의 민사 소송 관련 입장의 차이 발생, 여섯째, 시설 감식, 감정기관의 필요성 등이다.

### 5.1 화재조사업무의 근무실적 반영

화재조사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의 근무의욕 및 수사 의지력 확보차원의 개선 방안은 화재조사 업무를 근무실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이다.

화재사건이 절도, 강도, 살인사건에 비해 방화범 및 실화범 검거 점수가 낮게 산정되어 있어 피해액이 고액인 화재사건에 비해 소액 도난 사건에 더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현 상태에서 화재 사건 담당자의 관심과 의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화범, 실화범 검거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여 화재조사 담당 업무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욕적으로 화재조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소방 공무원은 화재사고 발생 후 진압과 동시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 내부적인 규정을 완화하여 보다 정밀한 현장조사 후 보고를 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하여야 화재현장 조사에 대한 근무의욕과 의지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 5.2 화재조사 교육의 통합 및 단계별·분야별전문교육

현장조사 요원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개선방안은 현재 기관별 시행 중인 화재조사 교육에 대한 통합 및 난이도에 따른 단계별 교육 추진으로, 소방 기관의 각 지방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 경찰 기관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전문화 교육, 수사보안연구소, 각 지방경찰학교의 화재조사 관련 교육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협의하여 교육을 통합 시행하는 방안으로, 경찰기관과 소방기관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화재현장 조사 체계에 대한 통합화를 모색할 수 있는 경찰, 소방 화재조사 요원의 인적 구성원 확보가 추가적인 장점으로 부각될 것이며, 양 기관의 자유로운 정보 공유와 서로 보완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교육의 성과를 높이는 전문적인 수준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 내용으로는 난이도를 단계별로 조정하여 획일적인 집단 교육 보다는 각 요원의 전공에 맞는 전기전공, 기계전공, 화학전공 등의 맞춤형 합동 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 5.3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홍보와 자료제공

「제조물책임법」의 이해력 부족은 피해자만 해당되

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 조사에 임하는 경찰, 소방조사 요원이 「제조물책임법」과 화재관련 「민법」,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등에 대한 민사 관련법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화재현장에서 조사요원의 민사 소송인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하여 잘못된 언동이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나, 입증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화재조사 요원의 민사 관련법에 대한 기본 교육이 필요하고, 피해자가 「제조물책임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전에 중소기업청, 기업은행, 각 PL관련 컨설팅 업체 등에서 기업을 상대로 홍보가 진행 되어온 것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소비자 및 피해자를 위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홍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5.4 피해자의 적극적인 입증조치

「제조물책임법」 관련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가 곁합에 대한 입증 조치 미비에 따른 관련 문제는 모두 피해자의 책임이다.

다시 말하면 화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 기관 및 소방 기관이 모든 민사 문제까지 책임을 지고 처리해 준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문제로, 경찰, 소방 조사가 끝난 화재 현장 및 반환된 증거물을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는 방안과 소송 당사자에게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실 감정기관에 감정을 하여 감정서를 확보하는 적극적인 입증조치가 필요하다.

#### 5.5 피해자의 민사소송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배려

경찰, 소방 기관의 화재조사의 목적과 피해자의 민사 소송 관련 입장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대한 미비점은 우선 경찰, 소방기관의 화재조사 현장에서 최소한의 방, 실화 및 범죄 수사에 연관성이 없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민사 소송 증거 확보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며, 피해자는 경찰, 소방의 화재조사의 목적이 소송과 관련된 목적의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증거 유실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수사의 범위 내에서 증거물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 감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 후 나머지 증거자료는 사실 감정을 하여 소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 5.6 대학(교)의 화재감정 관련학과 설립 및 사실감정업의 자격제도 도입

사실 감식, 감정기관의 필요성은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 아직까지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화재 관련 「제조물책임법」 민사 소송이 증가할 것은 누구나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기관의 화재조사의 목적과 민사 소송에서의 화재조사의 목적이 서로 다른 점은 국내에서 화재 감식, 감정 업체가 필요한 이유로서, 국내에서도 민간 사설 화재감정업의 발전 가능성과 경제적 소송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 시점에서 상용화될 화재감식, 감정시장에 체계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화재감식, 감정을 독립 학문으로 다루어지는 대학의 학과와 전문대학원 설립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난립하는 화재감정 업체로부터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설감정업에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 자격증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사설 시장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 6. 결 론

국가는 화재조사 제도 자체를 민원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나, 각 기관의 화재조사의 목적에는 민사 소송의 목적을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어 그 한계에 대한 공백을 피해자가 보충 또는 반증하기 위해서는 자위적인 증거 확보 활동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 사설 화재감식, 감정, 해석 업체는 꼭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정부 기관의 대표적인 화재조사 기관인 경찰, 소방은 「제조물책임법」 시행 이후 증가된 민사 소송에 대비한 실질적인 안으로 현재 국가 화재조사 제도의 소방, 경찰의 일원화다.

화재조사 제도의 일원화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중복조사로 인한 조사 기일의 단축과 조사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화재조사요원 또한 서로를 보완 협력함으로써 전문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찰, 소방 화재조사 전문 요원은 교육 시점에서부터 통합 교육을 선행하여 양 기관의 인적 공감대를 형성 후 각 기관의 화재조사의 목적을 반영할 수 있는 업무 조정과 분장을 협의 후 조사 제도 통합이 진행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소비자, 민원인의 원하는 민간 사설 화재감정업의 난립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대학에 화재 감정 관련학과 설립과 감정업 자격 제도를 신설하여 민간 화재 감정업의 체계적인 발전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 참고문헌

1. “제조물책임(PL)길라잡이”, 기업은행 (2002).
2. 「제조물책임법」 제1조(제정 2000.1.12 법률 제6109호).
3. 박창순, “화재조사 및 수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찰학회보, Vol.5, pp.43(2003).
4. “방재와 보험”, 한국화재보험협회, pp.7, pp.11(2006.9).
5. “화재사건 접수대장”, 경기지방경찰청(2003-2007).
6. “08년7월 전국화재발생 현황분석결과”, 소방방재청, pp.4(2008).
7. “방재와 보험”, 한국화재보험협회, pp.75(2006).
8. 김영철, “한국의 화재원인조사의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9. 이근주,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2003).